

■ 2025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 회의일시 : 2025년 7월 15일(화) 13:0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수미, 김승일, 박지수, 백다흠, 서수복, 유경숙, 정지교, 최희주

1.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2025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이내(2020~2024)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한 경우 1년차(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6개월간 최대 월임금의 50%(상한 120만원), 및 2년차(12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6개월간 최대 월임금의 25%(상한 6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예술 분야 고용환경을 개선하며, 연수단원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근무경험 축적 기회 제공으로 전문인력으로서의 경력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가. 심의기준 및 가중치 설정

신청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근로계약 사항’에 대하여 70%, ‘예술인력 운영현황’에 대하여 30% 비율로 심의하였으며, ‘근로계약 사항’의 세부 지표는 ①정규직 전환 여부(25%), ② 보수 수준(25%), ③ 근로계약의 구체성(10%), ④ 근무조건의 적정성(10%)으로 구성하여 평가함.

나. 심의 방법

아래 다섯 가지 지표에 대하여 5개 등급(A/B/C/D/E)으로 구분하여 8인의 심의 위원이 개별 채점하였음.

- ① 정규직 전환 여부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존재 여부,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계약서 세부 조항 간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사회보험 취득 여부를 확인하였음.
- ② 보수 수준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대비 지급되는 임금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함.
- ③ 근로계약의 구체성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만으로 충분히 본인의 근로조건을 인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 ④ 근무조건의 적정성 : 근로계약서에 기반하여 법정 및 약정 근로조건의 운영 여부와 그에 따른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의 적정성을 심의함.
- ⑤ 예술인력 운영현황 : 전환인력의 경력단계에 비추어 직무 설정 수준이 적절 한지, 배치 직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 정도를 심의함.

3.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현황 등)가. 정규직 전환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시점을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만료 시점을 작성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았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한 후 교부한 근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승인을 진행하기로 함.

나. 최저시급 이상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했으며, 대부분의 단체가 최저 임금 이상 지급하였으나, 일부 단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통상시급 산출이 어렵거나 기본급만 보았을 때 최저시급 미달로 판단되지만 매월 실제 지급된 임금명세서상에는 직무수당 등이 추가되어 각종 수당을 포함할 때 최저시급 이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음. 명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직무수당의 성격 등을 확인하였으며, 최저시급 미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을 때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이거나 휴게시간이 확인되는 경우 최저시급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음.

다. 지원금 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경우가 우려되는 단체가 있으므로, 지원기간 종료 이후로도 계속 고용여부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합의가 존재하였음.

4.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선정요인, 선정그룹의 공통적인 강점 등) 심의대상 단체 총 44개처에 대하여 297,000,000원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결정함. (조건부 승인이 전제되었던 단체의 경우, 단체와 사실관계 확인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재 제출받아 근로계약 기간 등 재 확인 후 교부 확정 함) 선정단체는 적격 요건을 충족함과 더불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지원 대상자들이 지속적인 근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5. 소회 및 당부사항

문화예술업의 특성상 고용안정 혹은 정규직 고용유지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단기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경력개발에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단체 또한 발전적 사업의 개발이 어려워 결국 문화예술분야의 발

전을 더디게 만들 수 있는바, 이러한 정규직 고용전환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와 예술 단체, 그리고 문예술분야 전반이 개발되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타 업종에 비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 오류, 복리후생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해보이며, 공연 등 일정에 의하여 근무일이 변동적일 경우 주52시간 위반 혹은 임금체불(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특수성 기재,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심의위원 일동